

[별표 10]

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(제29조제1항 관련)

1.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

평가항목	평가방법
지반 및 지질 현황	가.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. 시추조사
지층(地層)의 빈 공간 [이하 "공동"(空洞)이라 한다]	가. 지하물리탐사(지표레이더탐사, 전기비저항탐사, 탄성파탐사 등) 나. 내시경카메라 조사
지반안전성	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

2.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절차

- 가.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- 나.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
- 다. 공동 등 조사
- 라. 지반안전성 검토
- 마.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
- 바. 종합평가 및 결론

비고

1. "시추조사"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지하물리탐사"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3. "지반안전성 분석"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